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재급여 우선지급제 도입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3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목적 추가 명시 및 산재급여 우선 지급 제 도입 등	2
2. 의사 등의 재해자 동의 없는 산재 신고 등	10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0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증가함. 이로 인해 업무상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의 대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노동자들은 치료비 부담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개인 적금을 해지하거나 생계비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목적 추가 명시 및 산재급여 우선 지급제 도입 등(안 제1조 개정 및 안 제42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목적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 기간을 90일로 전제하여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보험급여 결정이 지연될 경우 청구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2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u>재해근로자의</u>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1조(목적) ----- ----- ----- ----- <u>충분하고 적절한</u> <u>치료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시키고,</u> ----- ----- -----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 ----- ----- -----.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다만, 우선 지급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급여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기간,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

고,¹⁾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의 내규에서는 역학조사의 기한을 180일로 하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²⁾

최근 산재사건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2024년 63.9일로 63.4% 증가하였고, 이 중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72.4일에서 2024년 227.7일로 32.1% 늘어났음.

[산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재 평균 처리기간*	39.1	43.4	47.6	55.0	63.9
업무상 사고	15.5	15.3	15.9	16.5	17.7
업무상 질병	172.4	175.8	182.0	214.5	227.7

*업무상 재해로 처리된 최초요양, 유족급여, 최초요양 결정성 요양비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기간

**자료: 고용노동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역학조사 결과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역학조사의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간 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건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2020년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역학조사 기간은 441.4일, 직업환경연구원(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역학조사 기간은 275.2일이었으나 2024년 기준 각각 699.8일과 588.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2020년~2024년 역학조사 의뢰건수, 회신건수 및 소요일수]

(단위: 건, 일)

구분	전 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2020년	607	561	296.8	54	70	441.4	553	491	275.2
2021년	679	526	400.7	83	69	601.3	596	457	371.5
2022년	474	456	466.1	36	58	659.8	438	398	436.7
2023년	204	517	635.0	30	66	954.6	174	451	588.1
2024년	308	328	604.4	26	47	699.8	282	281	588.8

* 자료: 고용노동부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지체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³⁾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재해근로자에

3) 원칙적으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산재승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산재 승인 후에 과도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부가 가능한 상황이나,⁴⁾ 건강보험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의 지원이 지체될 수 있고⁵⁾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이에 대한 불복⁶⁾도 청구할 수 없는 등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것임.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목적으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한 건강과 직무능력 회복을 구체화하여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보험급여 결정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업무상 질병 급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재여부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며, 조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재해근로자를 두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6) 산재급여 결정은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심사, 재심사(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을 통해 이루어짐.

텅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산재급여 우선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우선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기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개인의 산재급여수급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환수 대상 등 대강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법체계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재해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이고⁷⁾ 재해조사 결과 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재해근로자는 보험급여 지급 요건(업무상 재해 인정)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바, 산재급여를 우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면 증명책임에 관한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외의 산재보험급여 우선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반

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

면,⁸⁾ 일본은 치료비에 대하여만 우선지급제도를 실시하되 의료기관에 무이자 대부를 실시하고 산재 불승인 시 건강보험과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⁹⁾

고용노동부는 안 제1조에 관하여 현행법 제1조의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에 의학적 치료·심리안정·직업 재활 등을 통한 건강, 직무능력 회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별도로 추가 명시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보험급여 선지급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 중 사고는 비교적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새로운 직업병·유해요인의 등장 등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으로 재해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조사(특별진찰·역학조사 등)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문적인 조사를 거치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산재급여 우선지급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에 대해 산재급여 우선지급 후 산재가 불인정될 경

8) 다만, 임승지 등의 연구(“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41(1), 2021, pp. 73-74.)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는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독일은 70%, 프랑스는 50%)을 기준으로 장기간(최대 1년 내외) 상병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9)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2025.2.)

10) 대한의사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530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산재급여 우선지급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제출함(2025년 2월 7일 제출).

우 기지급된 산재보험금을 환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다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야하는 행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으로 인해 환수해야하는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지급금 환수가 어려울 경우 기금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의사 등의 재해자 동의 없는 산재 신고 등(안 제116조제5항·제6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등’)가 4일¹¹⁾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안 제116조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안내·조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16조제6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

11)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되는 부상·질병의 경우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u>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u> <u>⑥ 제5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공단은 이를 도와야한다.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¹²⁾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데,¹³⁾ 2024년 기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한 경우는 전체 요양급여 신청 건수 173,603건 중 107,884건(62.1%)임.

한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산재은폐가 전체

1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상급종합병원, 일정한 시설·인력 요건을 충족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포함됨.

13)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산재 발생건수 중 66%에 이른다는 지적,¹⁴⁾ 직업성 암 추정 건수 중 실제 보상건수는 1%에 불과하다는 지적¹⁵⁾ 등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시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사등의 신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산재급여 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산재보험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은폐된 산업재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2024년 말 기준 6,475개소로,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약국 제외¹⁶⁾, 78,261개소)¹⁷⁾ 중 8.3%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의사등의 산재 신고를 허용하여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산재 은폐를 억제하고,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산재보상 절차로의 이행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의사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업무상 재해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14) 김정우(2020),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노동연구」 27(1)

15)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1), “안전보건이슈리포트”(제1호), pp. 6-7.

1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17) ‘2024년 종별 요양기관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검색

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의사등의 업무상 재해 관련 신고는 의료인의 자발적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의사등의 산재 관련 지식 부족·행정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신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의사등의 업무상 재해 관련 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내를 받는 대상 또는 절차를 개시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의사의 산재 신고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관장기관과 의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의사가 산재보험관장기관에 근로자의 산재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¹⁸⁾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근로자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6), “독일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p. 30.

문 의 처
02)6788-5540